

# 안산시 시세의 감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8-415
----------	-------

제출년월일 : 2020. 8. .

제출자 : 안산시장

## □ 제안이유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장애인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범위가 확대되고,
- 「조세특례제한법」의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규정이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며,
-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으로 특구의 개발 및 육성을 위하여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 연구소기업 및 첨단기술기업 등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를 감면하기 위함.

## □ 주요내용

- 장애인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범위를 장애인과 그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와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자동차까지 확대함 (안 제2조).
- 「조세특례제한법」의 외국인 투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규정이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되어 관련 규정을 정비함(안 제6조).
- 강소연구개발특구내 첨단기술기업 등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재산세 감면 신설 (안 제7조의4).

## □ 개정조례안 : 붙임1

## □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2

## □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3

## □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사항 없음

## □ 예산수반사항 : 해당사항 없음

- 비용추계미첨부사유서 : 붙임4
- 사전예고(결과) : 의견있음(1건) - 붙임5
  - 입법예고 : 2020. 5. 6. ~ 2020. 5. 26. (20일간)
- 기타 참고사항
  - 현행조례 : 붙임6
  - 방침결정문 : 붙임7

## 〈 불임 1 〉

# 안산시 시세의 감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시세의 감면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조 내지 제7조”를 “제3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으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존속의 재혼한 배우자를 포함한다)·직계비속(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다)·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이하 “가족관계 등록부”라 한다)에 의하여 그 장애인의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 또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혈족·형제자매로 확인되는 사람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 중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을 “따른 자동차세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제2조에 따른 취득세를 면제받은 자동차(이하 “면제자동차”라 한다)를”로, “이 조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을 “면제자동차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4항) 중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면제자동차”로, “제8조제5항”을 “제8조제6항”으로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및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사람이 모두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고 같은 법 제10조의3에 따른 영주자격을 가진 사람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로 가족관계등록부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갈음할 수 있다.

제4조제2항 중 “「지방세특례제한법」”을 “법”으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 법 제78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본문 단서에 따른 감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같은 법 제78조의3제12항에 따른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 법 제78조의3제1항제2호 본문의 “5년”을 “10년”으로 하고, “2년”을 “5년”으로 한다.
- 법 제78조의3제2항제2호 본문의 “5년”을 “10년”으로 하고, “2년”을 “5년”으로 한다.
- 법 제78조의3제3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2호나목의 “3년”을 “6년”으로 하고, “2년”을 “4년”으로 한다.

제7조의2 제목 “(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을 “(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감면율”을 “경감률”로 한다.

제7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4(강소연구개발특구 지역에 대한 감면)** ①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연구개발특구법”이라 한다) 제26조에 따라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연구개발특구지역을 개발·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같은 법에 따른 입주자격을 갖춘 자에게 임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과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 직접 사용(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연구개발특구를 개발·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② 「연구개발특구법」 제4조에 따른 지역내에서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첨단기술기업, 연구소기업,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연구기관이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같은 법 제40조의 입주승인이 취소된 경우를 포함한다)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제11조 중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에 따른”을 “법 제17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본문 중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을 “영”으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장애인용 자동차의 자동차세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5일 이후 자동차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 경과조치)** 2019년 12월 31일까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6항에 따른 조세감면신청을 한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 같은 법 제121조의2제4항, 제5항, 제12항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은 종전의 「안산시 시세의 감면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다.

**제5조(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6항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소관 실 · 과		공정조세과
임 안 자	실 · 과장 직위 · 성명	공정조세과장 김 복 수
	담당 · 팀장 직위 · 성명	세정팀장 박 성 규
	담당자 성명 · 전화	김 기 숙 (행정 2198)

< 불입 2 >

## 신·구조문대비표

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를 2022년 6월 30일까지 면제한다.

### 1.·2. (생 략)

#### 〈신 설〉

② 장애인이 대체취득 [이 조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가 아닌 자에게 해당 자동차를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고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 조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또는 그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

### 1.·2.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및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사람이 모두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고 같은 법 제10조의3에 따른 영주자격을 가진 사람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로 가족관계등록부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갈음할 수 있다.

④ ----- 따른 자동차세 및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제2조에 따른 취득세를 면제받은 자동차(이하 “면제자동차”라 한다)를-----

--면제자동차를-----

#### 〈삭 제〉

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자동차세를 추징한다. 다만,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의 소유권을 장애인이 이전받은 경우,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장애인으로부터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받은 경우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 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장부상 등록 여부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 제4조(문화재에 대한 재산세 감면) ① (생략)

② 「문화재보호법」 제27조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추가로 감면하는 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6조(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재산세  
감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재산에 대하여  
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한다. 다만, 「조세특례제  
한법」 제121조의5제3항에 따른 추징대  
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  
징한다.

- ##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외국인투자

#### 제4조(문화재에 대한 재산세 감면) ① (현행과 같음)

② 범

제6조(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 법 제78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본문 단서에 따른 감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같은 법 제78조의3제12항에 따른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 법 제78조의3제1항제2호 본문의  
“5년”을 “10년”으로 하고, “2  
년”을 “5년”으로 한다.
  - 법 제78조의3제2항제2호 본문의

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15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공제)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5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외국인투자

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5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공제)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

2항제3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10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공제)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

2항제4호 나목 및 다목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0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공제)한다.

제7조의2(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법 제75조의2제1항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감면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신 설〉

“5년”을 “10년”으로 하고, “2년”을 “5년”으로 한다.

3. 법 제78조의3제3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2호나목의 “3년”을 “6년”으로 하고, “2년”을 “4년”으로 한다.

제7조의2(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경감률-----.

제7조의4(강소연구개발특구 지역에 대한 감면) ①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연구개발특구법”이라 한다) 제26조에 따라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연구개발특구지역을 개발·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같은 법

에 따른 입주자격을 갖춘 자에게 임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과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 직접 사용(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연구개발특구를 개발·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② 「연구개발특구법」 제4조에 따른 지역내에서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첨단기술기업, 연구소기업,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연구기관이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같은 법 제40조의 입주승인이 취소된 경우를 포함한다)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제11조(감면 제외대상)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 「지방세법」 제13조제5항

제11조(감면 제외대상) -----  
-----법 제17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